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한국농어촌공사 및
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산권 보호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농업인·개인 소유 농지에서 종중 등의 농지도 포함하고, 개발 용도 지정이 되면 지정 전 계약 농지까지 임대 등 수탁을 제외하고 있어,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임대 등 수탁을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한편, 농지연금의 과도한 수요를 제한하고,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농지 매입기준 개선(안 제19조의2)

나. 농지의 임대 등 수탁 기준 완화(안 제19조의7)

다. 농지연금 신청·지원기준 명확화(안 제19조의9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제5호 중 “농업인이 아닌 개인이”를 삭제한다.

제19조의7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임대·사용대가 수탁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계약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대상자로 결정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)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5. <u>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법률</u> <u>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</u> <u>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</u> <u>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</u> 6. ~ 8. (생 략) ② (생 략)	제19조의2(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6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7(농지의 임대·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) ① (생 략)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 는 임대·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. 1.·2. (생 략) 3. <u>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·</u> <u>지구·구역·단지에 있는 농</u>	제19조의7(농지의 임대·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·</u> <u>지구·구역·단지에 있는 농</u>

<u>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</u> ③ (생 략) 제19조의9(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) ① (생 략)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, 적합한 경우에는 <u>지원대상자</u>로 결정할 수 있다. 1. 2. (생 략)	<u>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</u> ③ (현행과 같음) 제19조의9(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</u>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2